

(사)한국가족상담협회 / 분과학회
연회비 납부 및 자격유지 안내

1. 연회비 납부

(1)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구분	대상	회비 (원)
자격회원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50,000
	가족상담전문가 1급	40,000
	가족상담전문가 2급	30,000
	가족상담전문가 3급	30,000
	준회원	20,000

■국민은행 468001-01-064121 <예금주 :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입금시,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 801010)

◎평생회원 연회비 면제

(2) 한국부부상담학회

구분	대상		회비 (원)
자격회원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모든 급수) 소지자	20,000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모든 급수) 미소지자	50,000
	부부상담전문가 1급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모든 급수) 소지자	20,000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모든 급수) 미소지자	40,000
	부부상담전문가 2급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모든 급수) 소지자	20,000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모든 급수) 미소지자	30,000
	준회원		20,000

■국민은행 663901-04-006130 <예금주 : 한국부부상담학회>

◎ 분과학회 연회비는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연회비와 모두 납입하셔야 합니다.

(2)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구분	대상		회비 (원)
자격회원	내면아이상담 전문가 1급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모든 급수) 소지자	20,000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모든 급수) 미소지자	40,000
	내면아이상담 전문가 2급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모든 급수) 소지자	20,000
		(사)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모든 급수) 미소지자	30,000
준회원		20,000	

■국민은행 387201-01-112835 <예금주 :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 분과학회 연회비는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연회비와 모두 납입하셔야 합니다.

2. 회원 및 자격유지 규정

본 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가족상담사 회원의 전문성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자격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함을 알려드리오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자격규정 제6장 18조(가족상담전문가 자격 유지)에 의거하여 자격유지 요건 미충족시 가족상담전문가 자격이 정지되며(수련감독, 1급의 경우 차기년도부터 정지), 제 20조(자격의 제한)에 의거 정지기간 중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다.

구분	자격 유지 규정
수련 감독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학술발표회) 또는 연2회 이상 전국가족상담센터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에 참여한다. 3) 상담사례 수련감독 활동과 상담교육,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매 1년간 1회 이상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 5) 자격갱신 시, 연구실적자료 1편 게재 또는 2편 심사
1급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학술발표회) 또는 연2회 이상 전국가족상담센터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에 참여한다. 3) 상담교육,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매 1년간 1회 이상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 5) 자격갱신 시, 연구실적자료 1편 게재 또는 2편 심사
2급, 3급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학술발표회) 또는 연2회 이상 전국가족상담센터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에 참여한다. 3)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매 1년간 1회 이상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

(2) 한국부부상담학회 (한국부부상담학회 회칙 16조)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부부상담전문가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된다.

- ① 한국부부상담학회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 ② 연 1회 이상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주관하는 집단연수회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③ 연 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학술발표회) 또는 연2회 이상 전국가족상담센터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에 참여한다.

④ (사)한국가족상담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3)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회칙 16조)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내면아이상담전문가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된다.**

①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② 연 1회 이상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주관하는 집단연수회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③ 연 1회 이상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학술발표회) 또는 연2회 이상 전국가족상담센터협의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에 참여한다.

④ (사)한국가족상담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사 단 법 인 한국 가족 상담 협 회
자 격 관 리 위 원 회**